

세계 1.26 행동의 날

2008 세계사회포럼-1.26 세계공동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차례

1·26 세계행동의 날 제안문	3
1·26 프로그램 소개	6

[의제별 자료]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9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12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17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	21

[부록]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설명	25
세계 각국의 1·26 준비 상황	41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전쟁·빈곤·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제안문

2008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IMF 위기 10년,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의 확대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줄 이은 기업도산... 10년 전 일이다. 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해법은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IMF가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사회에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며 사회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부는 노동법 개악하고 한미 FTA를 강행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군사세계화에 동참하여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단행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배 세력이 내놓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는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위기를 재발과 초국적 자본은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착취 강화, 온갖 부정과 비리를 발판으로 주식을치를 부풀리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된 반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에 나선 민중들은 ‘경제 발전의 적’으로 내몰려 극악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초국적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확대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착취와 폭력적인 단속추방으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동원해 전 세계 농업을 장악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국적 농기업에 한국의 농업을 내맡기면서 농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윤의 논리 앞에 주거, 교육, 식량, 물, 에너지, 의료에 대한 민중의 권리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한, 바닥 생존을 강요당하는 민중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민중의 힘으로!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오늘날 민중들이 처한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

러나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 맞선 민중들의 다양한 운동이 새롭게 분출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일터를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듯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해고위협과 극심한 착취와 탄압의 현실을 폭로하며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서 단결하고, 연대하고 있다. 저임금노동, 가내노동, 재생산노동, 비공식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노동력 재생산, 양육과 노인부양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별분업·성차별 이데올로기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여성농민들이 나서고 있다.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혈안이 된 WTO에 맞서는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할 때 농민의 생존권, 민중의 식량주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농민들은 칸쿤·홍콩에서 벌어진 시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나서 투쟁하면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할 때 노동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종식과 파병 한국군의 철군을 위한 투쟁,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 평화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 사회적인 빈곤의 확산과 함께 철거민·노점상으로 대표되던 빈민운동은 기본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반 빈곤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부터 한미 FTA/한EU FTA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모든 권리를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 심화한 민중들의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 속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다양한 사회운동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행동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거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고, 그 이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기구들의 회합을 겨냥한 대규모 국제 시위는 점차 확산되었다. 세계화의 위기가 더욱 분명해지는 가운데 새롭게 출현한 대중적 행동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침체된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에 힘을 얻어 2001년 탄생한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운동들이 결집하여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토론하고, 논쟁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을 함께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을 촉발시키는 한편, 2003년 2·15 국제반전공동행동과 칸쿤 WTO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시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조직되도록 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 국제주의·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자율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에는 다

보스포럼 기간에 맞추어 1월 26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서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 수천의 조직과 개인이 연명했으며,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미주사회동맹, 유럽사회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들 또한 1월 26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1.26 세계 행동의 날〉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1.26 세계행동의 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대안을 모색하고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다. 2007년 대선에서,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추동해온 '개혁세력'은 민중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실용·중도주의'를 표방하며 사상 초유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익적으로 계승하며 친기업적 지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민중들을 '무능한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선동으로 기만하며, 차별과 초국적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온갖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뒤로하고 민중을 기만하며 등장한 새 정권을 향해, 그리고 다보스포럼에 모여 초국적 금융자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전 세계 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것,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을 지속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인류가 선택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떠들어 델 세계적인 지배 엘리트들을 향해, 대안은 오로지 민중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선언하자. 1월 26일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차별을 깨부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연대하는 날로 만들어 내자.



2008 세계사회포럼 - 세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월 22일(화) 정오 / 장소 : 민주노총

전 지구 공동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진행. 각 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시드니~시애틀까지 24시간 동안 태양을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국제 공동 기자회견의 의의를 살려 공통의 문안을 성명서에 채택한다.

- 2008 세계 사회포럼/세계 공동 행동 주간 취지 및 국제적 추진 현황 발표
- 참가단체 취지 발언
- 공동성명서 낭독



1·26 세계 행동의 날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

일시 : 2008년 1월 22일(화)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

[주요 토론주제]

- 국내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 평가
- 세계 사회포럼을 비롯한 세계 사회운동의 현황 공유와 평가
- 1·26 행사를 출발점으로 한 이후 계획 모색
- 아시아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각각의 영역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에너지·물·철도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수위 앞

물산업 지원법 비판 정책 워크숍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세미나실

“개발보다 인간을!” 1·26 세계 주거권 공동행동

1. 이명박 정권 개발정책에 대한 브레이크! “개발보다 인간이다”

일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인수위 앞

2. “필리핀 남북철도프로젝트로 인한 주민 강제퇴거 현실을 고발한다”

일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재정경제부 앞

1·26 프로그램 소개

단속추방, 이주운동 탄압 분쇄 집중행동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 장소 : 명동성당 앞



1·26 세계행동의 날 인천 지역 공동실천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동암역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빈곤, 전쟁, 차별이 없는 세계를 위하여!”

2008 세계사회포럼 - 1·26 세계 행동의 날

일시 : 2008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관성적인 집회형식을 탈피하여 참가하는 모든 조직/개인이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화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리행진 및 부대행사 진행



3. 1·26 세계 행동의 날 집회 사전선전전

일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1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4. “인구1000만 거대투기장, 서울시를 고발한다” 서울시청 향 의행동 및 선전전

일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세계 1·26 행동의 날

의제별 자료

- 9 “개발보다 인간을!”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 12 반차별운동을 통해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의 투쟁으로
‘누더기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17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 21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

“개발보다 인간을!”

1·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 · 126국제주거권 공동행동 기획단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고 슬럼으로 몰아넣는 도시 재개발을 반대한다

1988년 한국 사회의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선포한 88서울올림픽. 그러나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려 72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서울시민에 대한 강제퇴거가 자행되었다. 동시에 거리 미관을 위한 명분으로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가 있었다. 당시의 강제철거의 상황을 그린 ‘상계동 올림픽’에는 일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명동성당에서 300여 일 간이나 천막생활을 하던 주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는 극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며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박탈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개미굴 같이 뽀뽀한 슬럼에 몰아넣고 부자들이 정원과 공터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수많은 도시들의 특징이다. 인도의 뭄바이의 경우 토지의 90%를 소유하는 부자들은 정원이 딸린 저택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반면, 빈민들은 토지의 10%에서 구겨져 살아간다.

도시재개발은 사적인 이익의 보장과 사회적 통제를 동시에 극대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도시재개발 과정의 강제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이 과정은 농민들이 토지와 주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채 도시빈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도시 재개발은 도시빈민을 다시 변두리로 몰아내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쓰레기 던지듯 쳐박는 과정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는 민중들이 노동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한 공간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전월세 등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평생을 뺏아지게 일해야만 한다. 제 몸 하나 뉘일 공간이 없는 노숙인들은 떨시와 추위 속에 거리에서 죽어간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넘어서는 주거권 운동을 전개하자

한국사회의 땅 부자 1%가 전체 사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집 부자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급 부족을 운운하며 아파트 건설 규제 완화에 여념이 없다.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도심지역 주택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올리는 한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등 거래세 인하나 종부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현행 6억원으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9억 원 대로 높이겠다고 한다.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면 주거권은 실현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만큼 집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거비 부담은 줄어야 하고 절실한 사람들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공급을 해소하지 못할 때, 낮은 분양가가 투기의 기회가 될 때, 세대주 기준이 정상가족모델만을 고집할 때, 이 정책들은 주거권 침해를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뿐이다.

집이 상품인 한, 주거권 실현은 불가능하다. 집값도 잡힐 리 없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이 돌아갈 리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거품 경제를 지탱하고 가진 자들의 투기 수단으로서 주택을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가진 자들의 정치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가난한 이들의 권리도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도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헤치고 있는 지배세력에 맞선 주거권 운동이 필요하다. 미관과 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시개발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집을 둘러싼 우리의 삶의 공간을 이루는 가치와 관계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는 점이 폭로되어야 한다. 경부 대운하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개발기대심리의 자극으로 주식시장 부양을 일으킬 수 있는 있지만 개발 지역의 농민, 영세세입자의 삶을 무참히 짓밟으리라는 것, 우리의 강과 땅과 숲한 생명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초토화시키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주거권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주거권 운동이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도시개발과 주거권을 둘러싼 정치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인간과 세계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들과 생태와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이들 간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화두는 투기성 개발의 중단! 강제퇴거 중단! 온전한 주거권의 실현이다.

이에, 2007년 1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IAI(국제주민연맹), FAL, HIC(국제주거연맹) 등은 2007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부터 2008년 1월 26일 세계행동의 날까지를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강제퇴거 없는 날”로 선언하고 전 세계적인 캠페인과 행동들을 제안했다. 지역 주민, 영세 세입자, 홈리스, 무토지농민, 이주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사회운동들의 연대로 주거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정치를 전개해나가자.

'개발보다 인간을' 1.26국제주거권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주거권 공동행동을 전개하자. 세계사회포럼 세계행동의 날인 1월 26일에 모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목소리로 주거권을 천명하자. 한국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주거권 운동의 흐름을 상호 교류하고 보다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자. 오늘날 주택정책과 도시의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가 함께 할 주거권 운동의 내용을 토론하자.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야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명박 정부의 이윤을 위한 불도저 개발정책이 낡은 재앙을 막아내자.

반차별운동을 통해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의 투쟁으로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차별 행위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면서 차별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달라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그게 왜 차별이냐’고 도리어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차별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 ‘차별은 나쁘다’는 사회적 관념과 무관하게 차별은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장병권 활동가는 “성정체성을 고민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왕따, 언어·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교사에 의해 부모에게 아웃팅(타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폭력적으로 알려짐)을 당하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전학, 자퇴권고, 퇴학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한다.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병철, 하경희, 2005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자살에 대해 고민해본 경험이 있고, 45.7%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에서의 차별은 더 심각하다. ‘커밍아웃’(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힘)과 함께 징병 신체검사에서 스스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성애자들은 징병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데, 징병신체검사규칙은 동성애를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4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며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질환 혹은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하고, 군대에서는 항상적인 차별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해 2월 한 동성애자 병사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군대에서 밝혀지자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했고, 성정체성을 입증하라며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받는 어이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했다.

또 사회 어디에서도 폭력이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학교에서만큼은 ‘체벌’과 ‘두발규제’가 횡

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의 배후에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다.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법적)미성년자'들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도,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 관련한 UCC를 제작·배포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을 '차별'이라는 이름 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병력에 따른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B형간염, 고혈압, HIV/에이즈 등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직장생활 등에서 차별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외에도 여성/이주노동자/국제결혼 이주여성/한부모 가족/비혼/저학력/외모 등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역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내용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차별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애초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인권위안)은 앞에서 언급한 20개의 차별 사유에서 ‘언어’가 빠진 대신 ‘고용형태’를 차별 사유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20개의 차별 사유를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고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 법령과 정책의 집행 △광고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간접차별, 그리고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역시 ‘차별 행위’로 정의했다.

인권위안을 보면,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국가인권위는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는 차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행사요건은 제한하되, 신속하고 실질적인 차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차별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가 해당 사건의 소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인정’될 경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별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판결할 수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징벌적’으로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5배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과 관련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가해자로 소송된 사람’이 진

다. 말하자면, 차별 가해자로 소송된 사람이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차별분쟁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우에서와 같이, 차별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간접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차별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확정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하지만 법무부는 차별 사유와 실효성이 대폭 축소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법무부는 인권위안에서 ‘고용형태’가 빠지고 ‘언어’가 추가된 기존의 20개 차별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삭제된 차별 사유를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한기총,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동성애반대국민본부 등과 같은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허용법’이라며 대대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급기야 이들은 “머느리가 남자라니 웬말이냐”와 같은 선정적인 구호를 외치며 11월 1일과 8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게다가 세계에서 나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 결과, 법무부는 7개 사유를 삭제해버리고 말았다. ‘괴롭힘’ 사유에서 역시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버림으로써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무색하게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 금지의 실효성 역시 인권위안에서 대폭 후퇴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구제조치만 남겼다. 차별시정기구의 소송지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으로 5백만원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법무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피해 주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고용 상의 차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 노동자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의 ‘기밀’을 몰래 빼내야 하는 노릇이다.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게 국가의 의무

차별은 ‘해도 되는 차별’과 ‘하면 안되는 차별’로 구분할 수 없다. 차별은 그 자체로 악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별은 사유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합적으로 드러나기 십상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다른 인종의 저학력 여성 성소수자 비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인종과 여성, 장애, 비혼에 대한

차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차별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차별을 금지하기는커녕, 실효성있게 차별을 금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차별을 일부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데 현 차별금지법의 모순이 있다.

유엔은 사회권규약 2조 2항을 통해 국가가 차별을 즉각적으로 철폐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림버그원칙 37항을 통해 “사회권규약의 당사국들은 작위적인 혹은 부작위적인 모든 차별적인 법과 규칙, 관행을 즉각적으로 폐지해 법률상의 차별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원의 부족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사회권의 불평등한 향유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차별도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차별을 충분히 없애기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을 것임이 예상된다. 차별은 체제 및 권력구조 등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며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비록 소수이지만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을 ‘모두의 것’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마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한다. 이것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 기득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에서는 남성/비장애인/한국 국적/한국어(특히 서울말)/소위 ‘정상가족’/이성애자/대졸/대기업 화이트칼라 등이 일반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국에서 기득권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한국 국적/한국어/아시아인 등은 금세 주변계층으로 밀려나고 만다. 그리고 기득권층과 주변계층으로 구분 짓는 사유들은 상당 부분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문제와 젠더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자본주의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저학력 노동자/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자 등과 같은 ‘차별 사유’에 의한 주체들은 자본주의에서 주변화된 노동자의 대표적인 범주에 속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들은 서로 융합되어 기득권의 이해에 기반해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냄으로써 끊임없이 배제와 차별을 낳고 그 결과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낳는다. ‘소수자’는 수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반대말인 소수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구조 상 ‘약자’라는 의미의 소수를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가 다수가 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진정한 진보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는 한 그에 저항하는 소위 ‘소수자’들의 투쟁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수자운동은 정체성 투쟁을 통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체제 내적 운동에 머무를 것이라는 기존 운동의 우려 속에서 통일/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과 일정 정도 긴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자운동이 시민권 획득 운동에 머무를 것인지 이를 넘어서 사회적 모순들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형적으로 내려질 수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모순들이 체제 모순과 결합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수자운동은 때론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하

고 때로는 그 자체가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기도 한다. 조호제 성공회대 교수는 『인권의 문법』에서 페미니즘을 통해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개념을 도입한 것이 “근래 들어 보편인권이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적 인권’이라고 할 경우 ‘누구에 의한 보편적 인권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데, 페미니즘을 통해 욕구와 권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여성의 욕구와 권리를 인정할 경우 당연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 성적 소수자들의 욕구와 권리 등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차이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라고도 하고, 이러한 운동을 ‘소수자운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치와 운동의 기획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토대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부흥시켜”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진경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소수자와 반역사적 돌발」에서 소수자를 “고통이나 결여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만과 과잉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소수자는 “고통을 피할 순 없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 그제 없었다면 볼 수 없었을 것을 보고 들을 수 없었을 것을 듣는 존재,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타자들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존재, 또한 그 기쁨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존재, 자신 아닌 수많은 타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존재, 자신과 다른 타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촉발할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이 우선이나 이론이 우선이나’와 같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우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이론이 없는 현실은 공허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 역시 무능력하고 때론 억압적이기까지 하다. 사회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하는 약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소수자의 입장에서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어나가고 그에 걸맞는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임에 틀림없다.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고자 하는 운동이 단지 법제정 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반차별운동과 더불어 모든 사회적 모순에 의해 억압당하는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투쟁이 모든 이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의 기획이 되기를 꿈꾼다.

** 이 글은 <진보평론> 34호에도 실렸던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이승산 | 사회진보연대

2007년에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4차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IPCC와 미국의 전 부대통령인 엘 고어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한편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는 소식과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경제신문에는 기후변화 수혜주와 기후변화펀드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심심치 않게 실린다. 우리에게도 무언가 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사태의 진원지는 어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지난 12월 발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총회'를 간략하게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초로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의 만남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리 회의, 절반의 성공?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의 휴양지 발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192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2012년에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포스트 교토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첫날인 12월 3일에 호주의 신생 노동당 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발표해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협상기한을 하루 넘긴 15일에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면서 끝났다.

발리 로드맵에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과 향후 2년 간의 협상을 통해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자는 시간표가 담겨 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성과로 꼽히는 것은 유엔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던 미국이 다시 참가한 일이다. 부시 정부는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발리 회의 개시에 맞춰 미 상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자는 워너-리버만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기업들조차도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

하라는 로비를 벌였다. 국제적으로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던 마지막 동지(호주)를 잃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딪혔다. 발리 로드맵 초안 채택을 거부한 미국 대표에게 파퓰리뉴기니 대표가 “회의에 참가할 뜻이 없다면 우리에게 맡겨두고 나가라”고 일갈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 에피소드는 미국의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로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적극적으로 회담을 주도했고, 개도국도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012년 후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적용받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주요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확정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 IPCC는 4차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2000년의 50~85%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발리 로드맵에는 ‘상당한 감축’(deep cut)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다. 현재 각국 정치인과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준 년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마치 대단한 변화를 결심한 마냥 으스스대고 있다. ‘GDP당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부시의 제안이나, 2020년까지(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의 25%를 줄이겠다는 아놀드 슈왈츠체네거 주지사의 약속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합의하지 못한 것은 향후 2년 간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적 대안들

그런데 협상에 대한 이런 평가를 듣고 있다면 각국 대표들과 자본의 이해에 좌우되는 한판 소동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 같아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한 등 끄기 같은 개인적 실천을 하자는 제안도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모의가 발리에 모인 운동들 사이에 진행되었다. 바로 기후정의 연합, ‘지금 기후정의를!(Climate Justice Now!)이 결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 운동(지구의 벗 국제지부 등), 급진적 기후·에너지 운동(탄소거레 감시, 기후정의를 위한 더번 그룹, 석유감시 등), 대안세계화 운동(초국적 연구소, 남반구에 초점을, 제3 세계 네트워크 등), 토착민·지역민 운동과 비아 캠페시아 등이 참가했다. 북반부와 남반부,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 정책연구소와 토착주민운동 등, 각 방면의 대표적 운동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슬로건으로 즉각적인 기후정의를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회의장 안과 밖에서 사회·생태·젠더의 정의를 위해 싸웠다. 환경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회담장 주변에서 각국 정부, 국제 금융기구와 초민족 기업이 추동하는 탄소거레·무역 자유화·사유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그릇된 해법을 비판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다.

1 <http://www.focusweb.org/whats-missing-from-the-climate-talks-justice.html?Itemid=94>

토착민과 여성,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역사적 책임과 생태부채가 있는 선진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석연료 대신 지역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요구하고, 에너지·숲·토지·물에 대한 민중의 주권과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리의 진짜 성공은 다양한 운동이 만나 기후정의의 향한 첫 발을 뗐다는데 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회담장 안뿐만 아니라 대지와 거리에서 전개할 것이다. 지금 기후 정의를!”

한편 2007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에 방콕에서 열린 자연 자원에 대한 민중주권 회의의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중 의정서’(People’s Protocol on Climate Change)를 논의하고 초고를 작성하였다². 이들은 올해에 유엔기후변화협약 1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폴란드에서 민중 의정서를 비준하는 민중 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 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원칙으로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발생시킨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중의 참여와 사회운동으로 민중의 권력과 주권이 보장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할 힘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민중 의정서는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과 기술 의존적 해결책을 거부할 것을 강조한다. 대신 자연자원에 대한 민중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적 규모의 강력한 운동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북반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한 기구를 통해 남반부에 자금과 기술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정의 연합과 민중 의정서는 협상장과 개인적 실천을 가로지르는 운동의 비전을 제공한다. 비전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자본주의 경제와 화석연료)을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기후정의와 민중의 주권)을 분명히 한 데 있었다.

2008년, 우리도 행동에 돌입하자

기후변화에 맞서는 운동은 급진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더 많은 소비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일국적 틀로 해결할 수 없기에 새로운 국제주의가 필요하고, 북반구의 역사적 책임을 묻자니 자본주의의 뿌리부터 신자유주의적 (무)질서까지를 비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또 이 운동은 모든 인류의 공유재인 대기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주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당당히 제기할 힘이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과감히 버리고,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문화적 혁명에 대한 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노골화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형성되면서 급진적인 운동의 가능성은 시장과 힘의 논리에, 정부 간 협상의 틀에 굴복하는 듯 했다. 교토 메커니즘으로도 입된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새로운 시장창출과 이윤추구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수년째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과 자본은 이윤을

2 <http://www.petitiononline.com/ppcc/petition.html>

방어하는 수준에서, 또는 새로운 이윤추구의 기회를 포착하는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으로 모색된 교토 의정서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서 기후정의와 민주주권의 관점에서 운동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가 15년 간의 기후변화 담론과 운동을 제약하듯이, 2009년에 합의될 새로운 틀도 그러한 힘을 가질 것이다.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보수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사정이 운동 진영이라고 해서 다른 것 같지 않다. 우리도 대안 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의 만남을 서둘러야 한다. 책임자가 없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대안적 운동으로 내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

올해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G8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이다. 각국은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 아베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 '시원한 지구 50'(Cool Earth 50)을 제안한바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절감한다는 안인데, 그 방안으로 기술효율성 향상과 시장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총리가 바뀌어서 원활한 구상에 차질이 있겠지만, 일본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을 초청하여 자국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심산이다. 그 외에도 미국, 러시아 등 기후변화협약의 성과를 왜곡시킨 주인공들이 자국의 치밀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회담에 참가할 것이다. 한국의 기후 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이 홋카이도 G8 정상회담에 맞서는 운동을 함께 기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제는 심각한데 시간은 촉박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맡길 수 없다면, 민중의 이니셔티브를 위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협상에 관한 유용한 자료〉

1. 윤순진(2002),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 3호』, 도요새.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개념들과 역사를 살피고 있다.
2. 아힘 브루넨그레버(2007), 「교토의정서의 정치경제학」,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
- 교토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기후문제를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볼 것을 제안한다.
3. "Climate and Capitalism" <http://climateandcapitalism.com/>
- 캐나다의 생태사회주의자 Ian Angus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Rising Tide North America" <http://www.risingtidenorthamerica.org/>
- 급진적 기후운동단체인 Rising Tide의 북아메리카 지부로 링크와 자료가 유용하다.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

임월산 |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국제연대 담당

세계사회포럼 세계행동의 날 '열린 공간'이라고 알려진 세계사회포럼이 더 성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국제 행동이 다가오고 있다. 1월 21~26일 한국과 전 세계 민중들은 "다른 세상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는 슬로건 하에서 저항하기 위해 결집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안은 FTA 중단, 미군 철수, 비정규직 철폐, 식량주권 쟁취 등 다양한 요구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많은 요구 가운데 "이주민의 완전한 노동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 쟁취,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이 있다.

국제적인 행동에 부합하는, 세계적 반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이 슬로건은 한국에서 이주의 구체적인 상태와 이주운동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완전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적어도 지금은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이상적 당위적 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이주와 장기간의 정착(이주보다는 이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는)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 국가들의 상황에서 더 현실적으로 들어맞는다. 이 국가들에서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조건이 실질적인 영주와 등록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 및 시민법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했다. 예컨대, 2006년 메이데이에 미국의 도시들을 휩쓴 대규모 이민권 운동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미국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뒷받침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시민권 요구였다.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현재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구체적 요구가 아니라고 해서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들의 이주운동보다 한국 운동이 덜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에서 시민권 허가 방식-시민권을 일부(착한 이주민)에게 주어서 다른 이들(불법 이주민)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 과정은 노예무역으로 인해 강제된 이주로 시작된 수세기에 걸친 이민의 역사, 정치적/시민적 편입이 사회적(경제적) 권리 투쟁보다 우선순위를 점했던 운동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현재의 이민자 권리 운동을 인종적 배제에 저항하는 시민권 운동의 투쟁과 비교하기도 했다.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공격은 동일한 현상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현재의 상태와 이주민의 요구를 만든 역사적 과정은 훨씬 짧은 노동 이주의 역사와 매우 제한적인 이민정책과 연관되지만, 또한 전통적으로 강력하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으로부터 새로운 이주민 운동의 형태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동권 요구가 앞에 놓이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궁극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후순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이주민의 상황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홍콩,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 나라 역시 최근에 이주민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장기 거주와 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정책을 갖고 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단기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한국에서 대략 90만의 외국인 가운데 적어도 40만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서구의 이민자 권리운동과는 달리 아시아 이주민들의 투쟁은 주로 현장의 권리에 집중하는데, 예컨대 임금과 노동조건이 고용주가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열악한 말레이시아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지난 10월에 전개한 저항이 그러하다.

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노동조합회의(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일본의 켄토이츠(전통일)노조, 홍콩노총(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최근 몇 년간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오고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노총에 가입된 이주노동조합이 몇 개 있기도 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 네팔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들 노조는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지도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와 노동권 요구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 그 성과물이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민의 완전한 노동권 및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사진은 지난해 '3·1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동지들.

서구 이민자 권리운동이 노동권에 대한 직접적 요구를 종종 비껴가거나 부차화하고, 이주민이 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집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요구를 명확히 해왔다. 시민권,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해 투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경로를 요구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힘과 성과물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단결권을 주장하며, 사회운동조직과 조직된 노동자의 일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만족스럽거나 충분치 않을지라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동권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과 추방에 저항하는 단호한 싸움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요구와 함께 만들어졌다.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결권을 그리고 이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이것이 승리하기 쉬운 싸움이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어렵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운동, 특히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MTU)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해왔다. 2005년에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후 이주노동자는 법적 싸움을 시작했고, 이는 2007년 2월 고등법원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결권 옹호 판결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결정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강제 단속, 특히 이주노동자 간부를 겨냥하는 단속을 벌였고 이는 11월 27일 서울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동시에 체포하여 보름 뒤 비밀리에 추방시키는 것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위의 투쟁은 **‘아만적 강제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집했고 위와 같은 요구를 포함하여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에 이주노동자 운동이 시의 적절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지도부 체포 직후부터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지도부와 중앙 간부들, 비대위 단체들은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거리 캠페인과 선전전, 집회 등을 진행하였고 이제 40일이 지났다. 이주민 조직화와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탄압 분쇄를 위한 이 투쟁은 단지 지도부 3인 단속 추방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의 정당성과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및 노조로 단결할 권리, 노동권을 주장하는 투쟁이다. 이는 아시아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이미 인정된 것이다. 또한 지도부 체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민주노동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 투쟁은 전반적인 노조탄압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한편 선언과 실천이 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주류 사회운동은 이주노동자 투쟁을 그들 자신의 투쟁으로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 전반과 특히 현재의 투쟁에도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권리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고, 사

회구조의 밑바닥에서 그러한 권리 획득이 한국의 노동운동과 광범위한 진보운동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비대위가 농성투쟁 장소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민주노총 건물로 옮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도부가 이주노동자들과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게 하여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노동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세계사회포럼 세계행동의 날로 돌아와 보자. 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투쟁이 그 일부라는 것은 명확하다. 일국적 수준에서 세계행동의 날은 적어도 이주노동자 운동이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여 '다른 세계'를 위해 싸우는 다른 많은 중요한 투쟁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 수준에서 그것은 아시아와 국제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행동의 날을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싸움을 한걸음 전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

세계 1·26 행동의 날

부록

반차별공동행동의차별금지법안 설명	26
세계각국의 1·26준비상황	42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설명

장서연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반차별공동행동(준) 법안팀

1. 법안의 구조

차별금지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 차별의 구제 총 4개의 장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정의규정(안 제2조)과 차별금지대상의 범위(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두고 있으며 차별금지사유에 언어,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과 고용형태, 성별정체성을 추가하였다. 제2장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는 정부는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장은 차별금지의 실제적 규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1절(고용), 제2절(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제3절(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4절(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5절(괴롭힘) 총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괴롭힘 대상을 모든 차별금지사유로 확대하였다. 제4장 차별의 구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악의적 차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송 지원 등을 도입하였다.

2. 총칙(안 제1장)

(1) 정의규정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호)고 정의하여 장애의 기간에 있어 장기간·단기간·일시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장애의 원인이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아

니라,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성별정체성”이라 함은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6호)라고 정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성별”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차별금지사유에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고용형태”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의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안 제2조 제7호)라고 정의하였다.

“근로자”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안 제2조 제11호 다목)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안 제2조 제12호 나목)라고 정의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보다 확대하였다.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병력”이라 함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5. “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6. “성별정체성”이라 함은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용형태”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등의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1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2) 차별금지사유의 규정

1) 차별금지사유의 열거적 형태/ 예시적 형태 논란

인권위안은 차별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법의 명확성이나 구제의 수위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차별사유를 “열거적 형태”로 제한하고 있었다(인권위안 공청회 자료집). 그런데 법무부안은 “등”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예시적 형태”로 규정하는 대신, 입법예고안과 달리 ‘대표적’ 차별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차별사유의 등장 등 차별사유의 유연한 해석을 위하여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 형태로 제한하기 보다는 예시적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미 “예시적 형태”로 열거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와 달리 ‘대표적’ 차별사유를 선정하여 특정 항목만 명문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명문화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사유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차별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서는 ‘차별금지사유’를 법률 해석의 2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모두 명문화하여 누구든지 차별금지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예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차별금지사유를 ‘명문화’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법률해석’이라는 2차적인 과정을 남겨 두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법적 관점에서도 필연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구제를 넘어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 및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정책 및 교육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차별시정계획수립 및 차별 교육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차별시정계획 수립 때 명문화 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차별사유들은 구체화해야 한다.

학력과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금지 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언어는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항목이고, 출신국가는 외국입법례에서 출신민족과 더불어 명시되는 항목이다. 한편, 차별금지사유를 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의 문언적 의미에 한정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는 현재 국제인권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의 소극적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위원회 및 각 규약 위원회의 해석이나 일반논평을 통해서 규약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외국 입법례 경향이며, UN인권위원회 등은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1 2004년도에 실시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차별,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외모에 따른 차별 등을 꼽고 있고, '01.11.~'06.1.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2,136건. 사유별로, 사회적신분, 장애, 성별, 나이, 학력/학벌, 출신국가 등의 순이었다.

야 한다고 해석 하고 있다.²

외국입법례 등과 비교하여 차별사유가 망라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정비가 되어 있거나 차별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외국입법례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뉴질랜드 ‘인권법’의 예를 보면, 차별금지사유 항목은 13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해당하는 차별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³

한편, 현재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비정규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비정규보호법으로 인해 비 상시업무나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업무습득이 가능한 비숙련업에 대한 대량계약해지 및 해고와 2년 단위 재고용, 그리고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확대가 발생하고 일부 이루어진 정규직화 역시 분리직군제 방식을 통해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존속시키고 있다. 직군제는 특히 대다수의 업종에서 분리직군의 대상을 주로 여성으로 하고 있어 성 차별의 고착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⁴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언어, 성별정체성,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명문화 하였다.

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

2 한국이 1990년 비준한 바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은 제 2조와 제 262조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인정하고 있고, 1994년에 있었던 투넌 대 오스트레일리아 재판 (Nicholas Toonen v Australia)에서, ICCPR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 위원회 (UNHRC)는 이 두 개의 조항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대상으로 성적 지향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이 1991년에 연기 없이 비준한 바 있는 아동 권리 협약 (CRC)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역시 조약의 제 2조에 등장하는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평 (General Comment)을 낸 바 있음. 한국이 1990년에 동의한 바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CESCR)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집단인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는 재차,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하고 있다고 우려표명.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 자료집 참조.

3 뉴질랜드 인권법(HRA 제21조 제1항) ①성별·임신과 출산 포함 ②혼인관계·미혼, 기혼, 동성애 결합, 사실혼, 법률혼·동성애결합·사실혼의 사별자/이별자,이혼, ③종교적 신앙 ④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교와 관련된 종교적 신앙이 결여된 윤리적 신념 ⑤피부색 ⑥인종 ⑦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국적이나 시민권 포함) ⑧장애-신체적 장애와 손상/ 신체적 질병/정신질환/ 지적·정신적 장애와 손상/ 심리적·생리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결손이나 비정상/ 인도견, 휠체어, 기타 치료수단에 의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의 신체 내 존재 ⑨연령(16세 이상) ⑩정치적 견해(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거나, 전혀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은 것도 포함) ⑪고용상태- 실업바/수혜자 ⑫가족관계- 자녀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전적이거나 부분적 책임/ 책임없음 /특정인과의 혼인,동성애결합,사실혼/친척관계 ⑬성적 취향- 이성애적 취향, 동성애적 취향, 양성애적 취향 (이준일, ‘차별금지법’ 157p 참조)

4 이주희,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간접차별

차별금지법안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보고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규제하고 있으며, 차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접차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그러나 아직도 간접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저조하고, 이 법제의 실질적 차별감소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례가 축적되거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간접차별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의 구제제도 효율성 미비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간접차별의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⁶

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2.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5 남녀고용평등법(제08372호 2007.4.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근로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6 이주희,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괴롭힘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괴롭힘(harassment)’은 원칙적으로 평등에 대한 침해의 의미를 지니는 차별대우라기보다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금지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행해지는 괴롭힘은 차별대우의 의미를 포함한다.⁷ 정부안은 괴롭힘의 대상을 성별, 장애, 인종, 출신민족, 피부색 5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괴롭힘을 차별에 포함시키는 한 괴롭힘의 이유는 모든 차별금지사유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괴롭힘을 차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캐나다인권법(CHRA, 1985)의 경우에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괴롭힘을 전부 금지하고 있다.

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차별행위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금지

미디어 영역의 광범위한 적용 필요와 차별시정의 극대화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광고에 한정하였다.

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3.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안 제2장)

제2장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는 정부는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안과 달리 안 제8조 제3,4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안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6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이용에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안 제3장)

(1) 차별의 영역

제3장은 차별금지의 실제적 규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1절(고용), 제2절(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제3절(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4절(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5절(괴롭힘)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안”이라 함)은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 등 14개 영역으로 나누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있다.^{8,9}

향후 각 차별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여 차별피해 당사자들의 실생활에서 차별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상의 차별금지(안 제10조 내지 제20조)

외국 입법례로 아일랜드는 장애 등 9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총 105개조)을 담고 있는 고용평등법을 1998년에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유럽연합차원에서 선구적인 고용차별금지법으로 평가되며, 동 법은 2000년 11월에 만들어진 유럽연합 제78호 지침(고용과 직업에서의

8 일레로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ADA')의 경우 공공부분의 차별금지영역은 공공교육, 고용, 공공교통, 레크리에이션, 보건의료조치, 사회서비스, 법원, 투표, 지역회의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42 U.S.C. § 12131(1)), 민간부분에서도 국가원조행위이론의 적용을 받는 모든 편의제공시설을 포괄하여 (1) 여관, 호텔 등의 숙박시설, (2) 식당, 술집 등의 식료품 제공시설, (3) 영화관, 극장, 운동장 등의 전시 또는 오락시설, (4) 음악회장, 회의장, 강연장 등의 다중운집시설, (5) 제과점, 식료품점, 옷가게, 쇼핑센터 등 판매 또는 임대시설, (6) 세탁소, 은행, 이발소, 미장원, 여행사, 구두수선가게, 장의사, 주유소, 회계사 또는 변호사사무소, 약국, 보험회사 사무소, 병원 및 건강진료 사무소,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7) 터미널, 정류장, 기타 항공을 제외한 특정 공공운송에 이용되는 정거장, (8) 박물관, 도서관, 화랑 기타 공공 전시 및 수집 장소, (9) 공원, 동물원, 오락공원 기타 레크리에이션 장소, (10)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장소, (11) 탁아소, 노인정, 가출자보호소, 음식구호소, 입양증개소 기타 사회서비스 시설, 또는 (12) 체육관, 체력단련실, 보물링장, 골프장 기타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42 U.S.C. § 12187)이 포함된다.

9 한상희, '헌법과 장애인 차별: 그 의미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 토론회, 2006

평등대우)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일랜드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차별금지의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 금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판례를 통한 구체화 보다 가능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의 해석, 적용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기준을 제시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¹⁰

이하 고용관련 차별시정을 위한 조치로 모집, 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는 전 단계, 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단체에의 가입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노사단체에 의한 고용차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¹¹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서류지원 및 면접시 직무와 관련없는 정보(성별 등)제시요구하거나 채용시 성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근로계약)

- ① 근로계약상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임금·금품지급상의 차별금지)

- ①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조건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 3년 동안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임금이 차등 지급된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
- ③ 제2항에서 유사한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두 근로자가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어떤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각자가 행하는 작업

10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영미법계의 연령 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11 아일랜드 고용평등법 참조.

- 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
- 3.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경우
- ④단체협약의 규정이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다.

제14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배치상의 차별금지)

- ①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해고·퇴직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차별의 구제(안 제4장)

(1) 실효적인 구제수단 도입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현실에서 차별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성무원 고용차별의 예에서처럼 현재 국가인

권위원회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이 부재하여 실제 차별행위의 시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정명령권, 소송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그러한 구제수단이다. 시정명령은 이에 불복이 있으면, 차별행위자, 즉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차별 피해자가 아닌 차별행위자에게 부담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도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35조, 제37조)

인권법 제정 당시에도 시정명령권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¹² 시정명령권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차별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가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정명령권의 도입이었다. 차별시정기구에 강제력이 있는 권한이 없다면,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의 시정권고만으로는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결국 인권위에 대한 불신과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¹³

이에 반해 법무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인권위가 법원을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인권위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의 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그 판단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⁴

결국 인권위가 구속력 있는 명령을 하게 될 경우 인권위의 시정명령에 불복인 사람은 현재의 재판 청구제도에 따라 소계를 하게 되고, 이것은 인권위의 조치를 법원의 결정에 종속시킴으로써 인권위를 기존의 다른 행정기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는 인권위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점, 또한 인권위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견해와 해석을 수렴·제공하는 기구가 되는 것을 막고,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들이 받아들여져 시정권고권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게 되었다.¹⁵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¹⁶에 의하여, 이미 시정권고에 불복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법원의 결정에 종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반대견해

12 박중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자료집 87이하 참조

13 차지훈 「인권법시안에 대한 토론의견」, 1998. 11. 6.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제97면

14 법무부 보도자료 「인권법시안과 입법추진계획」, 1998. 9. 25. 자료집

15 백운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2, 제 183-184면

16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는 설득력이 없으며, 이러한 반대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확인 선언에 그쳐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법상 시정명령(구제명령)이 가능한 각 위원회는 노동위원회¹⁷, 공정거래위원회¹⁸가 있다.

한편, 시정명령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상 민간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며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행명령은 할 수 없는데, 사인 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는 행정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한다.¹⁹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대상인 인권침해행위와는 달리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인의 지위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에 있어서는 같은 “사업주”로서, 편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같은 “시설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사인과 국가기관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²⁰

차별금지법은 차별 피해자 권리 구제 중심의 입법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시정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을 주면서 시정권고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한을 둔다면, 시정명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차별피해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피해 사실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의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시정명령의 요건으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제한하되, ‘차별행위의 행태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로 제한규정은 두지 않는다.²¹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차별행위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두는 것은 국가

17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결과 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가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동법 제89조).

18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제 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동법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에 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동법 제53조)을 하거나,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54조).

19 이원희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2. 8. 남녀차별금지법 시행3주년 기념세미나 발제문 제45면

20 박중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자료집 87이하 참조

2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권위원회 권고안과 같다.

제35조(시정명령)

-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④ ·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 ① 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제32조(시정명령) ① 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행위의 행태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노회찬의원안)

제6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 제61조 제2항 또는 제63조 제6항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

- ①위원회는 제35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이의신청)

- ①제5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소의제기)

제3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 ①위원회는 제35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8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39조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악의적 차별행위의 경우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5조)

정부안은 악의적 차별의 경우 제재 규정이 없고, 장차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²²

22 장차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성차별을 이유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였을 때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집·채용에서 남녀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의 억제기능 담보하기에는 벌칙 조항이 약한 실정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채용에서 남녀 차별, 제9조 임금의 금품 지급에서 남녀차별, 제10조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차별, 제19조 육아휴직 허용 및 복귀 등)

악의적 차별의 경우 피해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에 한정, 현행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차별시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정신적인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치게 되어 소송의 실익(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작아서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경우 등)이 없게 될 것이고,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여전히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²³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쟁의에 대해서 파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손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의 악의적 차별이나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라는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차별이나 해고 등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악의적 성격의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통상적 손해배상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차별을 억제하는 경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²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의 악질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①가해자 또는 장래의 차별가해자로 하여금 악의적 차별을 처벌하고 억제하는 기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차법안(노회찬안)

제7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악의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이상이므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차별행위를 고의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한다.

23 박종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자료집 87이하 참조

24 김태현,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능(차별 및 억제기능), ②실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유인을 주는 기능(법 준수 기능), ③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달성하고 있고, 특히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기능(전보적 기능)을 한다.²⁵

제44조(손해배상)

- ①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전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 ④제3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5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시킨다.

제45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용관련 정보공개 및 자료보존의무(안 제47조)

고용관련 차별사건에서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두고, 정보공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인권위의 권고안과 같이 공개거부시 차별추정 규정 두었다.²⁶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와 공개거부시 차별추정규정은 입증책임 전환과 더불어 고용관련 차별에서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상 필요하며, 특히 간접차별을 증명하는데 반드시

²⁵ 박중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자료집 87이하 참조
²⁶ 인권위안 제43조

③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필요하다.

제47조(정보공개 의무)

- ①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소송지원 마련

제41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소송지원)

- ①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글은 2008년 1월 4일 반차별공동행동(준)이 주최한 <차별금지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8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

전 세계 행동 계획 (1월 15일 현재)

● 전 지구적 기자회견 (Global Press Conference)

(www.wsftv.net 과 www.engagemedia.org를 통해 실황 중계할 예정)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백 만명의 여성, 남성, 단체, 네트워크, 운동조직, 노조 등이 1월 26일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함께할 것이다.

2008년 1월 22일에는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에 대한 국제적 기자회견이 개최되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마을, 지역, 도시에서 행진하고 연설하고 기념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은 주요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이 회합하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맞춰 이에 맞서기 위해 1월 26일 세계 행동의 날에 결집할 것이다. 같은 날에 폭력과 착취, 배제, 빈곤, 배고픔과 생태 위기를 양산하고 민중들에게서 인권을 빼앗아 가는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이데올로기로 채워지는 세계경제포럼이 대표하는 '낡은' 세계는 언제 나처럼 다보스에서 회합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민중들의 운동은 2008년 세계사회포럼을 위해 그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높이고 전 세계에서 행동할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사회운동, 네트워크,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슈를 제기하고, 민주적으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제안을 정식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결집하는 열려진 공간이다. 이 운동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지배당하는 세계,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2001년 첫번째 포럼이 개최된 이래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 만드는 상시적인 국제적 프로세스가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지난 7년간 전 세계 각기 다른 장소에서 1월 말에 개최되어 왔다. 그 정신은 2008년에도 그 장소들과 전 세계에서 계획된 행동들에 반영될 것이다. 1월 22일, 적어도 19개의 국제적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아틀란타(미국), 취리히(스위스), 첸나이(인도), 뭄바이(인도), 아르빌(이라크), 로마(이태리), 브뤼셀(벨기에), 상 파울루(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브라질), 나탈(브라질), 벨렝(브라질), 포르탈레자(브라질), 멕시코시티(멕시코), 아바나(쿠바), 라말라(팔레스타인), 마닐라(필리핀), 서울(한국), 베이루트(레바논), 바르셀로나(스페인),

기자회견은 세계 민중 투쟁의 내용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열리는 행동들을 강조할 것이다. 전 세계 수백

만명의 민중, 노동자, 단체, 네트워크, 운동조직들은 신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에 맞서 싸우고 있고 실제 생활의 대안들에 관한 다양한 제안이 있다. 그들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강력한 확신으로 단결된 모든 세대, 민중, 문화, 신앙을 대표한다.

● 세계 각 지역/나라별 행동 계획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연대의 축제’ 개최

○ 루마니아: 대토론회

○ 체코: 토론회

○ 방글라데시

- 다카에서 빈민을 위한 쉼터가 주최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쉼터”를 요구하는 시위와 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http://www.wsf2008.net/pt-br/node/3306> 참조.)

- 세계사회포럼-방글라데시 조직위원회 주최, “새로운 자유 경제와 발전- 방글라데시의 전망에 관한 전국 세미나”(http://www.wsf2008.net/pt-br/node/3542)

○ 벨기에

- 벨기에 사회포럼에서 시민들을 초청하여 운동과 단체들을 소개하는 “다른 브뤼셀” 프로그램 진행.

- 2008년 1월 21일에서 25일까지 워크샵, 토론회 등 각 지역 행사 개최. 1월 26일에 브뤼셀에서 공동행동.

○ 볼리비아

- 차별 반대 전국 캠페인 발족 (<http://www.wsf2008.net/pt-br/node/3476>)

○ 브라질

- 조이아니아: 빈곤에 반대하는 외침(<http://www.wsf2008.net/pt-br/node/2987>)

- 비토리아: 세계사회포럼 민중 행진(<http://www.wsf2008.net/pt-br/node/2972>)

- 벨로 오리존테: 신자유주의 반대 서커스(<http://www.wsf2008.net/pt-br/node/2916>)

- 상파울루: 대중집회, 사회운동연합(Social Movements Coordination)이 전국적인 시위를 제안(<http://www.wsf2008.net/pt-br/node/2910>)

- 산타크루즈 두 술: 2008 세계사회포럼 행사 개최(<http://www.wsf2008.net/pt-br/node/2840>)

- 리오그란데 두 술

- : 환경, 도시 · 시골 개혁에 관한 토론회(<http://www.wsf2008.net/pt-br/node/3494>)
- : 원주민거주지 폰타 레스치 섬 탐방(<http://www.wsf2008.net/pt-br/node/3507>)
- : 정치 · 문화 행사(<http://www.wsf2008.net/pt-br/node/3464>)
- 헤시피 : UR07 Varzea의 깨끗한 식수 자원(<http://www.wsf2008.net/pt-br/node/2777>)
- 타바팅가 : 아마존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 (<http://www.wsf2008.net/pt-br/node/2752>)
- 노바 프리부르구 : “물, 삶의 원천”(<http://www.wsf2008.net/pt-br/node/2561>)
- 여성운동, 전국적으로 모든 주에서 시위 조직 중. 현재까지 북부지역 리오그란테 두 노르치, 페르낭부쿠, 호라이마에서 시위를 개최하기로 확정. (<http://www.wsf2008.net/pt-br/node/3482>)
- 포르탈레자: 인권으로서 물과 토지를 위한 행진(<http://www.wsf2008.net/pt-br/node/3204>)
- 아라카주: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 공동 행동을 전개할 계획. 개막식, 자전거타기, 영상물 상영회 등 (<http://www.wsf2008.net/pt-br/node/3229>)
- 마세이요 : 1.26~27, 전국 물 사회포럼 준비 회의 (<http://www.wsf2008.net/pt-br/node/3354>)
- 브라질리아 : 〈10억 그루의 나무 캠페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 그루씩의 나무를”이라는 모토 아래, 천 그루의 나무와 백만 개의 씨앗을 심는 행사 (<http://www.wsf2008.net/pt-br/node/3386>)
- 바이아 : 여성단체, 환경단체들이 카포이에라(브라질 민속춤) 모임 결성(<http://www.wsf2008.net/pt-br/node/3339>)

○ 캐나다

- 퀘벡주 단체들이 모든 행사를 눈과 불의 이미지, “타는 눈”으로 연결시켜 주간 행사 개최.

○ 카탈루냐

- 바르셀로나, 인류발전 지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http://www.wsf2008.net/pt-br/node/2745>)
-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사회포럼 개최 집회 (<http://www.wsf2008.net/pt-br/node/3019>)
- 바르셀로나, 〈1.26 세계행동의 날〉 실황 중계 (바르셀로나 대학)

○ 콜롬비아

- 사회포럼에서 빈곤과 배제에 저항하는 투쟁에 집중.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서 대규모 콘서트 개최.

○ 콩고

- 킨샤샤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사회포럼 개최.

○ 칠레

- 칠레 사회포럼, 산티아고 주요 도로에서 행진. 곳곳에 “주제별 거점” 설치(<http://www.wsf2008.net/pt-br/node/3515>)

○ 핀란드

- 1월 21일에서 25일까지 헬싱키 시내에서 ‘세계사회포럼 연설회’ 개최. 1월 26일에는 헬싱키 시내에서 집회와 촛불행사를 모든 단체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최.

○ 프랑스

- 파리, 이주민 문제와 이라크 전쟁 문제에 관한 대규모 집회

- 마르세이유, 민중의 마그레브를 향해: 마그레브 대안세계주의자들의 도전(<http://www.wsf2008.net/pt-br/node/2922>)

- 마르세이유, 영상물 상영회(<http://www.wsf2008.net/pt-br/node/3394>)

- 도베르빌리에 사회포럼 2008(<http://www.wsf2008.net/pt-br/node/2818>)

- 모르비앙~에텔 지역 사회포럼(<http://www.wsf2008.net/pt-br/node/2712>)

- 지롱드, 다른 세계를 위한 모색: 군사적 · 경제적 · 사회적 · 생태적 전쟁에 대하여. 포럼, 강연회, 영화상영(<http://www.wsf2008.net/pt-br/node/3251>)

○ 독일

- 바우첸 사회포럼(<http://www.wsf2008.net/pt-br/node/2557>)

- 베를린: 세계사회포럼 및 유럽사회포럼에 참여해온 브라질 언론인 호드리구 누네스, 베를린사회포럼 활동가 코리나 겐셀과의 대화 (<http://www.wsf2008.net/pt-br/node/3426>)

: 베를린 사회포럼, 국내의 단체 활동에 관한 비디오 상영회(<http://www.wsf2008.net/pt-br/node/3473>)

-브란덴부르크: 공공재 사유화에 관한 영화 상영 및 토론회(<http://www.wsf2008.net/pt-br/node/3460>)

-플라우엔: 물에 관한 동시다발 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3420>)

○ 그리스

- 그리스사회포럼 주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 집회(<http://www.wsf2008.net/pt-br/node/2860>)

○ 이라크

- 아르빌의 히와르(쿠르드어로 ‘대화’) 센터에서는 아르빌, 도혹, 술레이마니아 등 쿠르드지역 행동과 함께 공동행동. 아르빌에서 정치인, 활동가, 이슬람주의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토론회 개최. 인권과 비폭력을 위한 이라크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세계사회포럼에 대해 아랍어 해설 게재.

○ 이스라엘

- 대안정보센터에서는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반대하는 행사 개최.

○ 일본

- 2008년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 반대 투쟁을 앞두고 1월 26일 도쿄 아라카와에서 “세계 행동의 날 집회 개최”.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이 노동권, 이주, 빈곤, 평화, 인권 등에 관한 워크숍 개최 (<http://www.wsf2008.net/pt-br/node/1260>)

○ 인도

- 팔레스타인 연대: 존 필저 감독의 다큐멘터리 “Palestine is still the issue”상영회 및 사회운동 및 정당, 언론과의 대화(<http://www.wsf2008.net/pt-br/node/2980>)

- 마하라시트라: 농민들의 자살과 농업 위기에 관한 다양한 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2978>)

- 뉴델리, 인도 사회 연구소 주최 토론회 “기로에 선 세계사회포럼” (1월 11일)(<http://www.wsf2008.net/pt-br/node/2465>)

- 전국여성조직과 달릿 단체 및 노동운동이 토지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 및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와 운동간 대화 개최.

○ 인도네시아

2007년 12월 발리 누사두아에서 개최된 워크숍의 후속작업으로 인도네시아소농연합(SPI)과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중운동〉 소속 여러 사회운동들이 1.26 세계행동의 날 계획을 수립했다. 농민, 노동조합, 여성, 어민, 외채반대운동, 인권운동, 청년학생, 반세계화운동 등이 1.26~27 이틀에 걸친 행동을 펼친다. 서부자바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국 세미나가 개최된다. (<http://www.wsf2008.net/pt-br/node/3366>)

○ 이탈리아

- 전 지역에서 평화, 군축,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연대경제 등의 이슈로 행사개최. 군사기지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 개최.

- 토리노 : 튜린에서는 ThyssenKrupp 사망 노동자 추모제 개최. Rete Lilliput의 평화활동가들이 평화행동 진행.

- 로마 : 로마에서는 공정무역, 유기적 사회적 경제에 관한 행사 개최.

- 피렌체 : 세계사회포럼의 지역포럼 프로세스를 도입한 2002년 유럽사회포럼 기념행사

- 베로나 오픈 시티 : 헌법에 관한 토론회 (ARCI Verona 주최)(<http://www.wsf2008.net/pt-br/node/2865>)

- 란치아노 : 반전 페스티벌 (<http://www.wsf2008.net/pt-br/node/2827>)

- 바스토 : “일터에서 촬영하기” 콘테스트를 통해 제작된 영화 상영회(<http://www.wsf2008.net/pt-br/>)

node/2732)

- 밀라노 : “소말리아 들판의 민중들, 잊을 수 없는 나라의 시와 영상” 영화 상영(<http://www.wsf2008.net/pt-br/node/3547>)

- 마세라타: 마푸체스(칠레) 민중들이 권리를 위한 콘서트(<http://www.wsf2008.net/pt-br/node/3376>)

- 라이아노 : “내가 전쟁놀이를 할 때, 아동 병사의 자화상” 영화 상영(<http://www.wsf2008.net/pt-br/node/3430>)

- 라킬라

: “연대의 경제에 관해 당신이 아는 것” 야외 사진전(<http://www.wsf2008.net/pt-br/node/3428>)

: 산 코시모 산의 비무장화를 위한 엽서 배포(<http://www.wsf2008.net/pt-br/node/3424>)

: 마다가스카르 지원을 위한 “안트시라베에 꽃을” 에 관한 회의(<http://www.wsf2008.net/pt-br/node/3418>)

- 발레 다오스타: 토론회, 전시회, 워크숍 (1월 23일~ 30일)(<http://www.wsf2008.net/pt-br/node/3370>)

- 바를레타 : 아우슈비츠 해방 63주년 기념 행사(<http://www.wsf2008.net/pt-br/node/3356>)

○ 모로코

- 카사블랑카, 세계사회포럼 모로코위원회 주최로 여러 문화, 정치행사가 1월 25일~ 27일에 개최됨 (<http://www.wsf2008.net/pt-br/node/3254>)

○ 레바논

- 베이루트 국제 저항 사회포럼을 1월 26일에서 2월 2일까지 개최.

○ 모리타니아

- 마그레브 사회포럼이 모리타니아에서 열림. 아프리카 협의회가 세계 행동의 날을 지원.

○ 멕시코

- 라틴 아메리카 정상회의에 맞춰 대규모 행사 개최. 멕시코 사회포럼, 행진 등 개최.

○ 멕시코

- 멕시코시티 : 남미국가정상회의에 맞춰 대규모 행사 개최, 멕시코사회포럼, 집회 및 행진 개최

- 과달라하라 할리스코: 세계 행동 주간- 다양한 단체, 조직들이 여러 주제에 관한 행사 개최 (<http://www.wsf2008.net/pt-br/node/2937>)

○ 파키스탄

- 파키스탄 사회포럼이 1월 19일에서 26일까지 세계 행동의 날 행사 주간에 각종 행사와 집회 개최

: 편자브, 세계 경제 안에서의 예측(<http://www.wsf2008.net/pt-br/node/2718>)

: 편자브, “핵과 비자 없는 남아시아”(<http://www.wsf2008.net/pt-br/node/2536>)

○ 필리핀

“투쟁은 지속된다! 일자리와 정의, 토지와 자유를!”을 주제로 한 세계 행동 주간(1.21~26)

(<http://www.wsf2008.net/pt-br/node/2806>)

○ 팔레스타인

- 나크바 (이스라엘 건국일, 팔레스타인 말로 ‘재앙’을 뜻함) 기억위원회, 팔레스타인 풀뿌리 단체들, 고립장벽 반대 캠페인 등이 알-무바다라(팔레스타인 전국운동)과 함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과 중동의 민중에 대한 전쟁 종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고립장벽을 따라 개최. ‘또 다른 목소리’ 캠페인은 가자 지역에 대한 국제연대 촉구 행동 계획. 라말라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가자 지역 포위를 비난하는 행사 개최.

○ 포르투갈

- 코스타 다 카파리카, 의약품 특허권과 다국적 기업의 문제에 관한 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2849>)

○ 남아프리카공화국

- 더반 디아코니아 센터, 사회적 변화를 위한 더반 세계사회포럼 축제(<http://www.wsf2008.net/pt-br/node/2844>)

○ 한국

- “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전쟁, 빈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및 다양한 부문별 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1737>)

○ 스페인

- 말라가, “지자체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교육, 공적 공간 등의 이슈에 관한 토론 (1월 24일). 세계사회포럼 대표들과 지자체간 논쟁(<http://www.wsf2008.net/pt-br/node/3407>)

- 마요르카, 마요르카 사회포럼 (<http://www.wsf2008.net/pt-br/node/3324>)

- 살라망카, <빵과 빵> 연극 공연 (<http://www.wsf2008.net/pt-br/node/3458>)

- 비토리아 가스테이스, 영화상영 (<http://www.wsf2008.net/pt-br/node/3534>)

: 신자유주의 반대 집중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3536>)

: “반세계화 운동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카를로스 타이보와의 대화 (<http://www.wsf2008.net/pt-br/>)

node/3531)

- 세비아: 세비아 사회포럼이 1월 23일에서 26일까지 사회운동회의 개최

- 코르도바: 대규모행진

○ 스위스

- 매년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대항하는 '또 다른 다보스' 포럼 개최.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2회 '연대 행진' 개최.

○ 스웨덴

- 루드비카, 기후와 정의를 위한 탐방(<http://www.wsf2008.net/pt-br/node/2728>)

- 말모, 유럽사회포럼 조직을 위한 인간 그물 만들기, 워크샵, 그룹 토론, 영화상영 등(<http://www.wsf2008.net/pt-br/node/3498>)

○ 스위스

- 매년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대항하는 '또 다른 다보스' 포럼 개최.

-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2회 '연대 행진' 개최

- 인간 존엄성 및 인권에 관한 회의(<http://www.wsf2008.net/pt-br/node/2878>)

○ 영국

- 에딘버러, 시오니즘, 인종청소,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길'(<http://www.wsf2008.net/pt-br/node/2838>)

○ 미국

- '풀뿌리 국제 정의 연대'에서는 전국적 행동 개최.

- 미국이 멕시코 국경선을 따라 설치하려는 펜스(죽음의 벽) 반대행동

- 뉴올리언즈에: '귀환권'을 요구하는 행동, 카트리나 생존자와 연대하는 행동 등 개최.

-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 미디어 전략 회의 (1.25~27)(<http://www.wsf2008.net/pt-br/node/2942>)

- 미치아나와 세계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과 미국사회포럼(<http://www.wsf2008.net/pt-br/node/2917>)

- 남 플로리다의 사회 정의(<http://www.wsf2008.net/pt-br/node/2914>)

- 뉴욕, "변화를 상상하고 지금 행동하라!" 사회 정의 활동을 위한 연대체 건설을 위한 아텔피 대학 학생들의 토론 (<http://www.wsf2008.net/pt-br/node/2901>)

- 워싱턴 디시, <정의로운 일자리> 개최 행사(<http://www.wsf2008.net/pt-br/node/3444>)

- 아틀란타, "빈민의 날" 행진 (<http://www.wsf2008.net/pt-br/node/3446>)

- 플로리다 올란드, <정의로운 일자리> 연설회(<http://www.wsf2008.net/pt-br/node/3439>)
- 센트럴 플로리다,
- 플로리다, 버저킹에 항의하는 학생 및 농민의 행동(<http://www.wsf2008.net/pt-br/node/3335>)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진정 자유로운 시장”(<http://www.wsf2008.net/pt-br/node/3469>)
- 미국친우봉사협의회, AFL-CIO에서 다양한 행동 개최.

● 국제 운동단체 행동 계획

- AMARC(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 World Association of Community Radio stations)은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행동 개최.
- CARITAS INTERNATIONAL에서는 전 세계 회원들에게 공동행동 참여 촉구.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국제주거권연합) : ‘모두를 위한 주거’ 공동행동 캠페인. 주거권과 토지권을 위한 캠페인과 행사 개최. 이는 2007년 10월 1일(세계 주거권과 토지권의 날)에 시작하여 2008년 1월 26일까지 진행.
- HEMISPHERIC SOCIAL ALLIANCE(미주사회동맹) : 위기를 겪고 있는 볼리비아와 연대하는 행동.
- IPS : 각국의 공동행동 소식을 ‘테라비바’에 게재.
- PEOPLE’S HEALTH MOVEMENT(민중건강운동) : 이집트, 이란, 아프리카, 아시아 등 회원단체들에게 공동행동 참여 촉구, 특히 건강과 신자유주의 문제에 초점을 둠. 사무국이 있는 이집트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단체인 ‘국제 건강을 위한 의사들’은 뉴욕에서 행사 개최.
- TERRE DES HOMMES (국제 아동권리 운동) : 1.26 행동을 아동의 권리 문제를 제기하는 장으로 하도록 네트워크 가동.
- VIA CAMPESINA (국제농민단체) : 초국적기업에 맞서는 행동 조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에 있는 56개 회원국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
- WORLD MARCH OF WOMEN (세계여성행진) : 17개 국가에서 행동 개최. 특히 기업 권력에 맞서는 이슈 제기. 1월 26일 행동에 대한 웹사이트 개설(<http://www.wmw-action26january.blogspot.com>).
- 지역사회포럼 참가자간 상호 소통(<http://www.wsf2008.net/pt-br/node/2575>)

1 · 26 세계행동의 날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1990년대 중반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외채위기와 각 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계기로 폭발하게 됨. 외채지불거부부터 WTO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반대에 이르는 다양한 운동이 형성됨. 한국에서는 특히 WTO 경제협정이나 FTA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시정부가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간, 이라크 등을 침공하면서 국제적인 반전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꾸준히 국제반전행동이 참여하면서, 운동의 지평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제적인 세계화 반대 투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한미 정부간 FTA 협상이 체결되면서, 한미 FTA 반대투쟁이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적 세계화 반대 투쟁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운동 전망을 재구축하며,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1 · 26 세계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1 · 26 세계행동의 날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운동 흐름들이 모색하는 국제적인 투쟁 전망을 상호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8년 1월 22일(화)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

■ 주발표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황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세계사회운동의 현황

- 한국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평가와 과제

- 2008년 주요 투쟁 과제

■ 주요 토론주제

- 국내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 평가

- 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세계 사회운동의 현황 공유와 평가

- 1.26 행사를 출발점으로 한 이후 계획 모색

- 아시아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각각의 영역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2008년 세계사회포럼-1 · 26세계행동의날 조직위원회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 · 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미디어문화행동,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국민교육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Seouldarity, 야만적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사회포럼조직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현장실천 · 사회변혁노동자전선,